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9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100 지방세(차량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2. 11.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차량 취득세 6,297,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9

가. 원고는 운수법인으로서 2011. 9. 15.부터 2013. 10. 21.까지 차량 12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인 합계 48,7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법인장부상 취득가격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 차량의 법인장부상 취득가격 156,618,907원에서 기 인정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 107,894,907원에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5. 8. 취득세 6,297,260원을 부과 및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9.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인 2014. 5. 1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9.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2. 24. 각하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 29.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지입차주이므로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을 원고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 원고가 최초에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는 실제는 차량등록업체가 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9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 도지사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조세심판의 재결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부적법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12.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4. 9. 29.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 경기도지사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9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4. 5. 1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9. 29.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가 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위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5.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동범

판사 우경아

판사 박용근